



#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징

상 품 명 :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상품특징 : 50백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한 개인고객 대상 정기예금

####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u>실제 계약</u>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 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상품유형	• 정기예금			
거래방법	• 신규 : 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금액	•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백만원 단위 가입 가능)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월 단위, 일 단위 가입 가능)			
	• 신규일(재예치일)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자율 적용 (금리기준일: 2024.08.30 세금납부 전 기준)			
기본금리	구분	<i>6</i> 7월 이상 127월 미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71월 이상 3671월 이하
	기본 금리	연 2.60%	연 2.50%	연 2.20%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단리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b>15.4%</b>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4.08.30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0	21	0	ĠН	
- 10	¥		우	쌩	

	( <b>kgf)</b> 우리은 <sup>*</sup>				
구 분	내 용				
만기후이율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 적용         경과기간       이 율       비 고         1개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 50%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만기시점 약정이율 × 30%         6개월 초과       만기시점 약정이율 × 20%         ※ 약정이율 : 만기(또는 재예치)시점 일반정기예금 기본금리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금액 × 약정이율 × (계약일수 ÷ 365일) ※ 계약일수는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일수를 의미 [예시] 신규일 2021.7.3.이고 해지일 2021.10.16.인 경우 계약일수 105일				
만기앞당김	• 만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만기일 전 1개월 내 가능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ul> <li>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li>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li> </ul>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가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서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담보제공	가능 •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 가능				
분할해지	<ul> <li>가능</li> <li>・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에 한하여 분할해지 가능</li> <li>・ 분할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li> </ul>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및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구 분	내 용 Unique in the interview of the inte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자료열람 요구권	<ul> <li>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li> <li>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제한사항	• 이 예금은 공동명의로 가입 불가
판매한도	• 4조원 (잔여한도는 영업점 및 스마트뱅킹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 중단)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개인금융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li>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li> <li>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li> </ul>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